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4일, 허성무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10.)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허성무의원)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한국석유관리원은 현행법¹⁾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²⁾, 현행법 제25조의2제2항³⁾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석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 ④ (생략)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의4(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생략)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성능평가 및 연구개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홍보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 및 품질관리 관련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되어 2021년 2월부터 시행되었음.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⁴⁾은 수소의 유통 및 거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⁵⁾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음.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제정]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 현황]

- 수소유통전담기관 업무: 수소 운송장비 지원 등 6가지 업무 수행 중
- (수소 운송장비 지원) 수송용 수소 사업자에 T/T 구매비를 지원
 - (수소 공동구매) 전국의 충전소와 수소공급업체간 계약 중개
 - (수소거래시스템 구축) 다수의 공급자와 충전소 대상 전자상거래 기반 수소 거래 시스템을 구축 중
 - (수소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운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Hying) 운영
 - (수급통계 및 수급전망 수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소 수급통계 조사 및 수급전망 수립 진행
 - (유통질서 및 신고센터 운영) 수소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디지털 고객만족센터 운영 등 수행
- 관련 예산
- 2024년: 예산현액 159억 8,100만원, 집행액 127억 6,700만원
 - 2025년: 예산액 58억 6,900만원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사업 범위에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에너지의 개발과 수출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⁶⁾,

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41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결과 공고 (2024. 1. 19.)

6) 「한국가스공사법」 개정(2018.12.31. 시행)을 통해 수소산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4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 4의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 ③ (생략)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미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의 수소 유통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소 유통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수소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수급·유통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 관련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소법」이 개정⁷⁾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66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④ (생략)

다만, 전통적 화석연료인 석유의 유통 및 품질관리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 관련 사업 외에 수소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은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다른 공기업의 사업 범위 개정 사례⁸⁾와 같이 확대하려는 사업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신에너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8) 한국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법」 개정(2024.01.09. 시행)을 통해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추가하였고, 한국가스공사 또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2018.12.31. 시행)을 통해 사업 범위에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하였음.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에서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에서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으로 구체화함 (안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중 “기여하는 사업”을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u>유통과 품질</u>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 ----- <u>유통·품질</u> 관리사업과 <u>탄소중립</u> 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 ----- ----- -----.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0. (생략)	② ----- ----- -----.	② ----- ----- -----.
11. 그 <u>밖에</u>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u>유통·품질</u> 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11. ----- <u>석유</u> ----- ----- ----- <u>유통·품질</u> 관리사업과 <u>탄소중립</u> 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 -----	11. ----- ----- ----- ----- <u>기여</u> 하는 <u>에너지</u> 원의 <u>유통·품질</u>

는 사업	----- -----	<u>관리사업 등</u>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 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유통·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석유제품”을 “석유”로,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를 “유통·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u>유통과 품질관리사업</u>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 -- <u>유통·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u> 등-- ----- ----- -----.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u>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u>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석유</u> ----- ----- <u>유통·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u> 등-----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